

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상위법(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25조)과 중복규제된 대불금상환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 첨.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.

평창군조례 호

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7조(대불금의 상환 등)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</p> <p><개정 95. 1. 10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0만원 미만은 3회 2.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. 30만원 이상 12회 <p>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, 그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<개정 95. 1. 10></p> <p>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“지방세 체납처분”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 한다.</p>	<p><삭제></p>

【 관계법령 발췌 】

○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

의료보호법시행규칙

제25조(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 방법) ①보호대상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.

1.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
2.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
3.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

③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.

④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〈개정 97.9.1〉